

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

제정	1995. 9. 1.	국립국어연구원	예규 제 11호
개정	2004. 4. 23.	국립국어연구원	예규 제 30호
개정	2005. 2. 17.	국립국어원	예규 제 44호
개정	2010. 1. 1.	국립국어원	예규 제 65호
일부개정	2014. 3. 10.	국립국어원	예규 제104호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초빙 대상)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,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, 국립국어원(이하 '국어원'이라 한다)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초청 연구원: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.
2. 현지 연구원: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.

제 3 조(초빙 절차)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(다만,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)

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.

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4 조(과제의 부여) 객원 연구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·선정하여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. [전문개정 2014.03.10]

제 5 조(보수)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 6 조(연구 활동 지원)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4.03.10]

제 7 조(연구원의 의무)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2. 연구 과제외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.
3.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.

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2. 연구 과제외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.
3.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.

제 8 조(위촉 해제)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부 칙 <1995. 9. 1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초빙된 객원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초빙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4. 4. 23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 2. 17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1. 1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3. 10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위 축 장

소 속 :

성 명 :

귀하를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 기간: 00.00.00 ~ 00.00.00)

년 월 일

국립국어원장